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98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뒤에 실음)

○副議長 崔鍾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를 맞아 서울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비대한 조직을 혁신하는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시정개혁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2차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58分 散會)

특별위원회 위원현황

| 윤 리 특 위 | 2002년월드 컵축구대회 지원특위 | 실업자대책 및고용창출 특 위 | 여 성 특 위 | 지방자치 특 위 |
|---------|--------------------------|-----------------------|---------|-------------|
| 10 | 10 | 10 | 9 | 10 |
| 이건상 | 김태운 | 김성태 | 양경숙 | 홍순철 |
| 오세근 | 김영준 | 장하운 | 송미화 | 최충민 |
| 김관길 | 이선재 | 김재실 | 이예자 | 김홍식 |
| 임호식 | 송태경 | 서홍선 | 김명수 | 김성환 |
| 김수복 | 김관수 | 나중문 | 이경애 | 김광수 |
| 노영석 | 김기덕 | 임동순 | 이해식 | 이동진 |
| 임원빈 | 박수환 | 임안순 | 차원갑 | 함태호 |
| 여정구 | 유기홍 | 주세만 | 이정은 | 하해진 |
| 황을수 | 김옥원 | 한춘자 | 이철호 | 오상준 |
| 장진국 | 이송죽 | 조상훈 | | 조성대 |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제 4 조로 하고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서울특별시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다목을 적용한다.

②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중전의 제3조) 제목 및 본문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국내여비지급”을 “여비지급”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단서”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로 하며, 동조제2호중 “영 제8조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영 제16조제3항단서”를 “영 제17조 제1항 단서”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영 제17조제1항 단서”를 “영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 4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진흥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1.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점 육성대상 산업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
3. 외국자본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4. 공장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산업유치지구 등 산업지구의 효율적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7. 기타 주요 경제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부의하는 안건

제 3 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업진흥 정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경제단체의 관계자
4. 기업인 또는 기업단체의 임직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 4 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국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제1항 및 제2항의 간사와는 별도로 자문 및 연구활동 간사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회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소위원회) ①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p>하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 <p>대학교수 또는 전문가</p> <p>2. 시의회 의원</p> <p>3. 경제단체의 관계자</p> <p>4. 기업인 또는 기업단체의 임직원</p> <p>5. 실업문제와 관련되는 시민단체</p> <p>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p> |
| <p>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적인 취업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 2. 실효성있는 직업훈련체계·방법·훈련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생산직·일용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전문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대졸미취업자 등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문화·환경분야의 고용추진 등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업대책 관련 주요시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고용창출방안 등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9. 기타 주요 실업대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부의하는 안건 <p>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 <p>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업대책을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p> <p>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제1항 및 제2항의 간사와는 별도로 자문 및 연구활동 간사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p> <p>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p> |